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9155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3.

제안자 : 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2019년 1월 25일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제36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19. 3. 11)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.

나. 2019년 3월 7일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제36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19. 3. 11)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.

다. 제367회 국회(임시회)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(2019. 3. 11)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

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라. 제36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19. 3. 12)는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환경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미세먼지 정보 관리·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7조).

또한,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“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”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5조의2).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”을 “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, 정책영향 분석, 배출량 관련”으로 하고, “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운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3호 중 “배출량 산정”을 “발생원인, 배출량 산정, 정책영향 등의 분석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·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 지정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·관리 등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지정 취소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<u>--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--</u> ----- ----- ----- <u>운영할 수 있다.</u> ② ----- ----- 1. (생략) 2. (생략) 3. ----- ----- <u>배출량 산정</u> ----- ③ (생략) ④ <u>그 밖에 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, 통계자료·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</p>	<p>제17조(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----- <u>미세먼지등의 발생 원인, 정책영향 분석, 배출량 관련</u> ----- ----- 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 ②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발생원인, 배출량 산정, 정책영향 등의 분석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·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u> 제25조의2(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 지정 등) ① <u>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·관리 등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</u></p>

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3.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

제28조(청문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(청문)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지정 취소